

## 團領으로 推定되는 袍衫名稱에 關한 資料調查

文 光 姬

東義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舊北齊則長帽短靴 合袴襖子 朱紫玄黃 各從所好 天子多着緋袍 百官士庶同服 隋改江南 天子則曰帽褶 公卿則中褐襦 北朝雜以戎狄之制 北齊貴臣 多著黃文綾袍 百官士庶同服之 <中華古今注卷中, 緋綾袍>

옛날 북제(北齊)에서 장모(長帽)·단화(短靴)를 더하고 고(袴)·오자(襖子)를 합쳐서 주(朱)·자(紫)·현(玄)·황(黃)의 색깔 중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랐다. 천자(天子)는 대부분 비포(緋袍)를 입었는데 백관(百官)·사서(士庶)와 같이 입었다. 수(隋)가 강남(江南)<sup>1)</sup>으로 북제(北齊)를 바꾼 후 천자의 옷은 겹삼(帽褶)<sup>2)</sup>이라 하고 공경(公卿)의 옷은 갈유(褐襦)라 했다. 북조(北朝)는 이적(夷狄)의 제도가 섞였는데 북제(北齊)에서 귀신(貴臣)은 대부분 황문능포(黃文綾袍)를 입고 백관(百官)과 사서(士庶)는 동일하게 입었다.

隋...百官常服 同於匹庶 皆著黃袍 出入殿省 天子朝服亦如之 惟帶加十三環以爲差異 蓋取於便事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수(隋)나라...백관의 상복(常服)은 서민과 같으며 모두 황포(黃袍)를 입고 궁전을 출입하였다. 천자의 조복(朝服) 또한 그와 같았으며 다만 띠에 13환(環)을 두어 차이를 두었을 뿐이었다. 대체로 일하는데 편한 것을 택하였다.

初 隋文帝 聽朝之服 以赭黃文綾袍 烏紗帽 折上巾 六合鞵 與貴臣聽朝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초기에 수문제(隋文帝)는 청조(聽朝)<sup>3)</sup>의 복장으로 적황문능포(赭黃文綾袍), 오사모(烏紗帽), 절상건(折上巾), 육합화(六合鞵)를 사용했는데 귀신(貴臣)<sup>4)</sup>과 같이 입었다.

二儀實錄曰 唐高朝初用隋制 天子常服黃袍及衫 後漸用赤黃 謂之赭黃 唐會要曰 玄宗時 韋縠奏 御案牘 去紫 用赤黃 自武德時 禁止士庶不得服 而天子服御之以黃 自韋縠之請也 <古今事物考 卷6.>

이의실록에, 당고조(唐高朝; 618~626)는 처음에는 수제(隋制)를 채용하여, 천자의 상복(常服)을 황포(黃

袍)나 황삼(黃衫)으로 하였는데 점차로 적황(赤黃)을 사용하였으며 적황(赭黃)이라 하였다. 당회요(唐會要)에, 현종(玄宗; 712~756) 때 위도(韋縠)가 주청하여 천자가 사용하는 서안(書案), 침상의 요에 자색(紫色)을 없애고 적황(赤黃)을 사용토록 하였다. 무덕(武德; 618~626) 때, 사서(士庶)에게는 입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천자의 옷에 황색(黃色)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도(韋縠)의 주청에서 시작되었다.

武德初 因隋舊制 天子聽服 亦名常服 唯以黃袍及衫 後漸用赤黃 遂禁士庶不得以赤黃爲衣服雜飾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sup>5)</sup>

무덕(武德; 618~626) 초에는 수(隋)의 구제(舊制)를 따라 천자의 연복(聽服)을<sup>6)</sup> 상복(常服)이라고도 불렀다. 다만 황포삼(黃袍衫)을 후에 점차 적황(赤黃)을 사용하다가 드디어는 사서(士庶)가 적황을 의복의 장식(雜飾)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唐代天子...常服 赤黃袍衫 折上頭巾 九環帶 六合鞵 皆起自魏周 便於戎事 自貞觀已後 非元日冬至受朝及大祭祀 皆常服而已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당대(唐代) 천자의 상복은 적황포삼(赤黃袍衫), 절상두건(折上頭巾), 구환대(九環帶), 육합화(六合鞵)로서 모두 북위(北魏), 북주(北周)에서 시작되어 군사적 사무에 편케하였다. 정관(貞觀; 627~649) 이후로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에 조하(朝賀)를 받거나 대제사(大祭祀)가 아니면 모두 상복으로 할 뿐이었다.

遼皇帝常服; 柘黃袍衫 折上頭巾 九環帶 六合鞵 起自宇文氏 <遼史 卷56, 志第25, 儀衛志 2>

- 1) 강남(江南); 南朝의 服制를 의미하는 것 같음.
- 2) 南朝의 天子服
- 3) 청조(聽朝); 朝廷에서 朝賀나 謁見을 듣는 일.
- 4) 귀신(貴臣); 귀족계급의 관료를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 5)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에도 同文이 있음.
- 6) 연복(聽服); 宴會의 자리에서 도는 쉬면서 庶談할 때 입는 옷

요(遼)나라 황제의 상복; 자황포삼(柘黃袍衫), 절상 두건, 구환대, 육합화인데 황문씨(宇文氏)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衫袍 唐因隋制 天子常服赤黃 淺黃袍衫 折上巾 九環帶 六合鞵 宋因之 有赭黃 淡黃袍衫 玉裝紅束帶 皂文鞵 大宴則服之 又有赭黃 淡黃襖袍 紅衫袍 常朝則服之 又有窄袍 便坐視事則服之 皆皂紗折上巾 通犀金玉環帶 窄袍或御烏紗帽 中興仍之…〈宋史 卷151, 志第104, 輿服3〉

(衫袍); 당(唐)나라는 수제(隋制)를 이어받아 천자의 상복은 적황(赤黃)·천황(淺黃)의 포삼(袍衫), 절상건, 구환대, 육합화를 사용하였다. 송(宋)나라가 그것을 이어받아 저황(赭黃)·담황(淡黃)의 포삼(袍衫), 옥장홍숙대(玉裝紅束帶), 조문화(皂文鞵)를 대연(大宴)에 입었다. 또 저황(赭黃)·담황(淡黃)의 규포(襖袍)·홍삼포(紅衫袍)가 있어 상조(常朝)에 입었다. 또 책포(窄袍)가 있어 편좌(便坐)·시사(視事)에 입었다. 모두 조사절상건(皂紗折上巾), 통서금옥환대(通犀金玉環帶)를 사용하였다. 책포에는 간혹 오사모(烏紗帽)를 사용하였다. 중흥(中興)에도 여전히었다.

金代皇帝視朝之服 初 太宗即位 始服赭黃 自後視百官 朝御袍帶 章宗即位 以世宗之喪 有司請御純吉 不從 乃服淡黃袍 烏犀帶 常朝則服小帽 紅襪 偏帶或束帶 〈金史 卷43, 志第24, 輿服中〉

금(金) 황제의 시조(視朝)하는 복장은 초기에 태종(太宗; 1126~1135)이 즉위하여 저황(赭黃)을 입기 시작했고, 그 후 백관(百官)을 만나는 조회(朝會)에서는 포대(袍帶)를 사용했다. 장종(章宗; 1188~1208)이 즉위하여 세종(世宗; 1161~1188)의 상(喪)에 유사(有司)<sup>122</sup>가 황제의 순건(純吉)<sup>123</sup> 사용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담황포(淡黃袍) 오서대(烏犀帶)를 입었다. 상조(常朝)<sup>124</sup>에서는 소모(小帽), 홍란(紅襪), 편대(偏帶) 또는 숙대(束帶)를 사용했다.

○今之公服 皆古之戎服 隋煬帝南游 命群臣以戎服從 大臣紫 中緋 小綠 〈朱子語類, 卷第91, 禮8, 雜儀〉

오늘날(宋朝)의 공복(公服)은 옛날의 용복(戎服)이다. 수양제가 남쪽으로 놀러 다닐 때 군신(群臣)에게 용복을 입고 따르도록 명령을 내렸다. 대신(大臣)은 자색(紫色)이었으며 중신(中臣)은 비(緋)색, 소신(小臣)은 녹(綠)색이었다.

問 今公服 起於何時 曰 隋煬帝南游 幸 命群臣皆以戎服從 五品以上服紫 七品以上服緋 九品以下服綠 只從此起 遂不易之制 〈朱子語類, 卷第91, 禮8, 雜儀〉

물기를 오늘날의 공복(公服)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였다. 대답하기를 수양제가 유행(游幸)할때 군신(群

臣)에게 용복(戎服)을 입고 따르게 하였는데, 5품 이상은 자(紫)색, 7품 이상은 비(緋)색, 9품 이하는 녹(綠)색이다. 단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드디어는 바꿀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今之朝服 乃戎服 蓋自隋煬帝數遊幸 令百官以戎服從 二品紫 五品朱 六品青 〈朱子語類, 卷第91, 禮8 雜儀〉

오늘날(宋朝)의 조복(朝服)은 용복(戎服)인데 대체로 수양제가 여러차례 유행(遊幸)할 때 백관(百官)에게 용복을 입고 따르도록 하였다. 2품은 자(紫)색, 5품은 주(朱)색, 6품은 청(靑)이었다.

唐代 常服…蓋古之褻服也 今亦謂之常服 江南則以巾褐裙襦 北朝則雜以戎夷之制 爰至北齊 有長帽短靴 合袴襪子 朱紫玄黃 各任所好 雖謁見君上 出入省寺 若非元正大會 一切通用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당대(唐代); 연복은…대개 옛날의 설복(褻服)<sup>8)</sup>인데 오늘날 그것을 상복(常服)이라고도 부른다. 강남(江南)<sup>9)</sup>은 건갈(巾褐)·균유(裙襦)로 했으며 북조(北朝)에서는 용이(戎夷)의 제도가 섞였다. 이리하여 북제(北齊)에 이르러 장모(長帽)·단화(短靴)가 있었고 고(袴)·오자(襪子)를 합쳐서 주(朱)·자(紫)·현(玄)·황(黃)의 색깔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비록 임금에게 알현하고 성시(省寺: 관청)에 출입할지라도 정월 초하루의 대조회(大朝會)가 아니면 일체 통용하였다.

唐人有官者 公服幞頭不離身 以此爲常服 又別有朝服 如進賢冠中單之類 其下 又有省服服爲常服 今之公服 卽唐之省服也 〈朱子語類, 卷第91, 禮8 雜儀〉

당인(唐人)중에서 관직이 있는 자는 공복(公服)·복두(幞頭)를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이로써 상복(常服)으로 삼았으며 또 진현관(進賢冠)·중단복(中單服)의 종류와 같은 조복(朝服)도 있다. 그 아래 또 생복(省服)이 있어 그것을 상복(常服)으로 입었는데 오늘날의 공복이 바로 당의 생복을 입는 것이다.

至唐 有三等服 有朝服 又有公服 治事時着 便時法服 有衣裳佩玉等 又有常時服 便是今時公服 則無時不服 〈朱子語類 卷第91, 第8, 禮雜〉

당(唐)에 이르러 세등급의 옷이 있었다. 조복(朝服)이 있었고, 또 공복(公服)이 있어서 치사(治事) 때에 입었다. 쉴 때는 법복(法服)을 입었는데 의상패옥(衣裳佩玉)등을 갖춘다. 또 상시복(常時服)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의 공복(公服)으로 입지 않는 때가 없었다.

7) 北周의 宗姓

8) 설복(褻服); ① 常服, ② 속옷

9) 강남(江南); 南朝를 가리킴

○ 圓領者 上領也 司馬溫公曰 上領者 本出胡服 朱子曰 上領衫 本朝因唐 唐因隋 隋因周 周因元魏 元魏者 拓跋魏也 苟求其原 未可曰一出於正也 <朝鮮王朝實錄, 高宗 25년>

단령은 상령이다. 사마온공<sup>10)</sup>은 상령은 본래 호북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고 주자(朱子)는 상령삼은 본조(宋)에서는 당(唐)을 이어 받았고 당은 수(隋), 수는 주(周), 주는 원위(元魏)를 이어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원위는 척발씨가 세운 위인데 만일 그 근원을 찾아보면 반드시 정(正)에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다.

上領服非古服 石古賢如孔門弟子衣服 如今道服却有此意 古肅亦未有上領者 惟是唐時人便服 比蓋自唐初 已雜五胡之服矣 <朱子語類, 卷第91, 禮8.>

상령복은 옛날의 옷이 아니다. 공문제자(孔門弟子)와 같은 옛 현자(賢者)들을 보아도, 의복이 오늘의 도복(道服)과 같으니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화(古畫)에도 상령인 것은 없으며 다만 당나라 사람들에게 편복(便服)이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당나라 초기부터 이미 오호(五胡)의 의복과 섞였던 것일 것이다.

又曰 後世禮服固未能猝復先王文舊 且得華夷 稱有辨別 猶得今世之服 大抵皆胡服 如上領衫靴鞋之類 先王冠服掃地盡矣 中國衣冠之亂 自晉五胡 後來遂相承襲 唐接隋隋接周 周接元魏 大抵皆胡服 <朱子語類, 卷第21, 禮8.>

또 가로대 후세의 예복은 진실로 선왕의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다만 중화와 오랑캐를 판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요즈음의 옷은 대체로 모두 호북(胡服)인데 예를들면 상령삼(上領衫), 화(靴), 혜(鞋)의 종류이며 선왕의 관복은 완전히 땅에 끌린다. 중국의관이 혼란해진 것은 진(晉), 오호(五胡)이래로 드디어 계속 이어지면서 부터였다. 당은 수를, 수는 주를, 주는 원위를 이어 받았는데 대체로 모두 호북이었다.

○ 宋(中興)의 士大夫襪衫 以白細布爲之 圓領大袖 下施橫襠爲裳 腰間有辟積 進士及國子生 州縣生服之 <宋史, 卷253, 志第106, 與服5.>

남송의 사대부의 난삼; 백색의 고은포(布)로서 그것을 만들고 원령대수이며 아래는 난(襠)을 달아서 치마로 한다. 허리에 주름이 있고 진사 및 국가생, 주현생이 그것을 입는다.

明代郡王長子裳服 烏紗帽 大紅紵絲織金 獅子開襟圓領 玉束帶 皂皮銅線靴 <明會典, 卷之60.>

명대 군왕장자의 상복; 오사모 대홍색 저사에 사자 무늬를 직금한 옷자락이 트인 원령, 옥속대, 조피동선화<sup>11)</sup>이다.

明代 狀元冠服 朝冠二梁 朝服緋羅爲之 圓領 白絹中單 錦綾 蔽膝全 <明會典, 卷61.>

명대 장원관복: 조관은 2량이고 조복은 비라(緋羅)로서 만든다. 원령이고 백사중단(白絹中單)이며 금수(錦綾)와 폐슬(蔽膝)이 구비된다.

明代內外官親屬冠服 洪武元年 禮部尚書 崔亮奉詔議定 內外官父·兄·伯·叔·子·孫·弟·侄用烏紗帽 軟脚垂帶 圓領衣 烏角帶 <明史, 卷67, 志第43, 與服3.>

명대의 내외관 친속(親屬)의 상복(裳服); 홍무(洪武) 원년에 예부상서 최량(崔亮)이 소를 만들어 의론을 결정하였다. 내외관 부(父)·형(兄)·백(伯)·숙(叔)·자(子)·손(孫)·제(弟)·侄(侄)은 오사모를 사용하고 연자에 띠를 늘어뜨렸으며 원령의(圓領衣)·오각대(烏角帶)를 사용하였다.

洪熙中 帝問衣藍者何人 左右以監生對 帝曰「著青衣較好」及易青圓領 <明史, 卷67, 志第43, 與服3.>

홍희(洪熙; AD 1425)중에 황제가 남색옷을 입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좌우에서 감생(監生)이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청의(青衣)를 입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여 청원령(靑圓領)으로 바꾸었다.

明代 洪武二十四年定 命婦常服用顏色圓領衫 <明會典, 卷文61.>

명대; 홍무(洪武) 24년(AD 1391)에 정하기를 명부의 상복(常服)은 색이 있는 원령삼(圓領衫)을 사용한다.

凡中宮供奉女樂奉鑿等官妻 本色鬚髻 靑羅圓領 <明會典, 卷文61.>

모든 중궁(中宮), 공봉(供奉), 여악(女樂), 봉란(奉鑿) 등의 관리부인은 본색(本色)의 적계(鬚髻)에 청라원령(靑羅圓領)을 입는다.

明代 提調女樂服黑漆唐巾 大紅羅鍍金花 圓領 鍍金花帶 皂靴 <明會典, 卷文61.>

명대; 제조여악은 검은 칠(漆)의 唐巾을 쓰고 대홍과소금화(大紅羅鍍金花) 원령을 입고 도금화대를 하고 조화를 신는다.

○ 金人之常服四帶 巾 盤領衣 烏皮靴 其束帶曰吐鶴 …其衣色多白 三品以皂 窄袖 盤領 縫腋 下爲襜積 而不缺袴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下, 衣服通制>

금인(金人)의 상복은 4가지 인데, 대, 진, 반령의, 오피화이다. 그 속대를 일컬어 토굴(吐鶴)이라 한다… 그 옷의 색은 대부분이 백색이고 3품은 검은색이며 책

10) 本名은 司馬光(1018~1086)이고 宋의 英宗, 神宗, 哲宗때의 名臣이다.

11) 明史, 卷66, 志第42, 與服 2에도 同一文 기록

수, 반령, 봉액이고 아래에 주름이 있으며 불결고(不缺袴)이다.

明代皇帝常服 洪武三年定 烏紗折角向上巾 盤領窄袖袍 束帶間用金·琥珀·透犀 永樂三年更定…袍黃 盤領窄袖 前後及兵 肩各織金盤龍一〈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명대 황제상복; 홍무 3년(AD 1370)에 정하기를 오사모의 각이 위로 향한 건(巾), 반령척수포, 속대 사이에 금, 호박, 투서를 사용한다…영락 3년(AD 1405)에 고쳐 정하기를 또는 황색, 반령, 적수이고, 전후 및 양어깨에 각각 반룡 1마리씩을 직금했다.

明代皇太子常服 永樂三年定 冠烏紗折角向上巾 亦名翼善冠 親王 郡王及世子俱同 袍赤 盤領窄袖 前後及兵 肩 各織金盤龍一 玉·帶·鞵 以皮爲之〈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명대 황태자 상복; 영락 3년(AD 1405)에 정하기를 관은 오사절각향상건인데 또한 익선관이라 한다. 친왕 군왕 및 세자가 동일하다. 도는 적색, 반령척수에 전후 및 양어깨에는 각각 반룡 하나씩을 직금한다. 대는 옥으로서 헤는 피(皮)로서 한다.

明代文武官公服 洪武二十六年定 每日早晚朝奏事及待班·謝恩·見辭則服之 在外文武官 每日公座服之 其制盤領右衽袍〈明史, 卷67, 志第43, 輿服3.〉

명대 문무관 공복; 홍무 26년(AD 1393)에 정하기를 매일 아침 저녁·조정에서 주청하는 일 및 시반·사은·견사때 그것을 입는다. (조정)밖에 있는 문무관은 매일 공좌(公座)에서 그것을 입는다. 그 제도는 반령우입포이고…

明代內使冠服 明初置內使監 冠烏紗描金曲脚帽 衣胸背花盤領窄袖衫 烏角帶 鞵用紅 扇面黑下樁…其常服 葵花胸背團領衫 不拘顔色 烏紗帽 犀角帶 無品從者 常服團領衫 無胸背花 不拘顔色 烏角帶 烏紗帽 垂軟帶 年十五以下者 惟戴烏紗小頂帽〈明史, 卷67, 志第43, 輿服3.〉

명대 내사관복; 명초에 내사감을 두었는데 관은 오사묘금곡각모이고 의는 홍배반령척수삼이며 오각대에화는 홍선면 흑하장을 사용한다…그 상복은 규화홍배 단령삼(葵花胸背團領衫)으로 색깔에 구애되지 않으며 모사모, 서각대를 사용하였다. 품계가 없는 증자(從者)의 상복은 단령삼으로 홍배화(胸背花)가 없었으며 색깔에 구애되지 않고 오각대, 오사모를 사용하였으며 연대(軟帶)를 늘어 뜨렸다.

明代侍儀舍人冠服 洪武二年…常服 烏紗唐帽 諸色盤領衫 烏角束帶 衫不用黃〈明史, 卷67, 志第43, 輿服

3.〉

명대 시의사인의 관복; 홍무 2년(洪武; AD 1369)에 상복으로는 오사당모와 여러 색의 반령삼·오각속대를 사용하며 삼(衫)은 황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明代吏員巾服 洪武四年定 各衙門掾史 令史 書史 司吏 典史 穿皂盤領衫 繫絲緜 戴四方平定巾 十四年定 吏員皂衣 改用青色〈明會典, 卷文61.〉

명대 이원의 건복; 홍무 4년(AD 1371)에 정하기를 각 아문, 연사, 영사, 서물, 사리, 전리는 조반령삼(皂盤領衫)을 입고 사조(絲緜)를 매었으며 사방평정건을 썼다. 74년에 정하기를 이원의 조의(皂衣)는 청색(青色)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明代士庶巾服 洪武三年定 士庶初翼四帶巾 今改四方平定巾 雜色盤領衣 不許用黃…四年定 皂隸公使人穿皂盤領衫 戴平頂巾 繫白搭帶帶錫牌〈明會典, 卷文61〉<sup>12)</sup>

명대 사서의 건복; 홍무 3년(AD 1370)에 정하기를 사서인(士庶人)은 처음에 사대건(四帶巾)을 썼는데 오늘날 사방평정건(四方平定巾)으로 바꾸었으며 잡색 반령의이지만 황색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4년(AD 1371)에 정하기를 조례공사인은 조반령삼(皂盤領衫)을 입고 평정건을 쓰고 백유박대(白裕褙帶)를 매고 석패(錫牌)를 달았다.

○明代常服 洪武三年定 凡文武官常朝視事 以烏紗帽 團領衫 束帶爲公服 一品玉帶 二品花犀帶 三品金銀華帶 四品素金帶 五品銀銀花帶 六品·七品素銀帶 八品·九品烏角帶〈明會典, 卷文61〉

명대 상복; 홍무 3년(AD 1370)에 정하기를 모든 문무관은 매일 조정에서 일을 볼 때 오사모 단령삼을 사용한다. 속대(束帶)로서 공복(公服)을 삼되 1품은 옥대, 2품은 화서대, 3품은 금삼화대, 4품은 소금대, 5품은 은삼화대, 6품·7품은 소은대, 8품·9품은 오각대이다.

明代皇太子妃常服 洪武三年定 犀冠刻以花鳳 首飾鈿鐳 用金玉珠寶翠 請色團領 衫金繡鸞鳳 惟不用黃 帶用金玉犀〈明會典, 卷之60〉

명대 황태자비 상복; 홍무 3년(AD 1370)에 정하기를 서관은 화봉으로서<sup>13)</sup> 새기고 머리를 장식하며 팔찌는 금·옥·주·보취를 사용하고 모든색의 단령삼에는 금으로서 난봉을<sup>14)</sup> 수놓는다. 다만 황색을 사용하지

12) 庶人 관복에 대해서는 明史 67, 43, 輿服 213에도 있음.

13) 親王妃 常服은 鸞鳳 대신에 花鳳임.

14) 鸞鳥와 鳳凰. 英俊한 선비와 有德한君子를 비유한 새이름.

못하며 대(帶)는 금옥서(金玉犀)를 사용한다.

明代 宮人冠服 制與宋同 紫色 團領 窄袖 編刺折枝小  
葵花 以金圈之 <明史, 卷66, 志第42, 輿服2.>

명대의 궁인관복은 제도가 송과 같다. 자색, 단령,  
책수에 가지가 휘어진 작은 해바라기 꽃을 두루 수놓  
고 금으로서 그 주위를 둘렀다.

○宋代諸臣下公服 凡朝服謂之具服 公服從省 公謂之  
常服 宋因唐制 三品以上服紫 五品以上服朱 七品以上服  
綠 九品以上服青 其制 曲領大袖 下施橫欄 束以革帶 幘  
頭 烏皮鞋 自王公至一命之士 通服之 <宋史, 卷153, 志  
第106, 輿服5.>

송대 모든 신하의 공복; 모든 조복(朝服)은 구복(具  
服)이라 하며 공복은 종생(從省)인데 상복이라고 한다.  
송은 당의 제도를 이어받아 3품이상은 자색을 입고 5  
품이상은 주색(朱色)을 입으며 7품이상은 녹색(綠色)  
을 입고 9품이상은 청색(青色)을 입는다. 그 제도는  
곡령대수(曲領大袖)이며 아래에 횡란(橫欄)을 붙이며  
혁대(革帶)·복두(幘頭)·오피화(烏皮鞋)를 덧붙인다.  
왕공에서부터 한변이라도 벼슬을 한 선비까지 두루 그  
것을 입는다.

○唐 武德四年八月十六日勅 三品已上 服大料紬綾及  
羅 其色紫 飾用玉 五品已上 服小料紬綾及羅 其色朱 飾  
用金 六品已上 服絲布雜小綾 交梭及雙紉 其色黃 六品  
七品飾銀 八品九品鎔石 流外及庶人 服絁縹布 其色通  
用黃白 飾用銅鐵… 天授三年正月二十二日 內出繡袍 賜  
新除都督刺史 延載元年五月二十二日 出繡袍以賜文武官  
三品已上 其袍文仍各有訓誡…文銘皆各爲八字回文…貞  
元十一年九月 令常參官復衣綾袍 金玉帶 至八年十一月  
三日 賜文武常參官大綾袍 太和六年六月勅 三品已上 許  
服鶴銜瑞草雁銜綬帶 及對孔雀綾袍襖 <唐會要 32, 異文  
袍>

당(唐)나라; 무덕(武德) 4년(A.D. 621) 8월 16일에  
칙명(勅命)을 내려 3품 이상은 대료주릉(大料紬綾) 및  
라(羅)를 입도록 하였다. 그 색깔은 자색(紫色)이고  
자색으로 옥(玉)을 사용하였다. 5품 이상은 소료주릉  
(小料紬綾) 및 라(羅)를 입게 하였으며 그 색깔은 주  
색(朱色)이었고 장식은 금(金)을 사용하였다. 6품 이  
상은 사포잡소릉(絲布雜小綾)을 입고 교사(交梭) 및  
쌍순(雙紉)의 직조를 사용하였는데 그 색깔은 황색(黃  
色)이었다. 6품·7품은 은(銀)장식을 하였으며 8품·9  
품은 유석(鎔石)으로 장식하였다. 유외관(流外官)<sup>15)</sup>과  
서인(庶人)은 주견서포(絁縹布)를 입었으며, 그 색  
깔은 황색·백색(白色)을 두루 사용하였으며 장식으로  
동철(銅鐵)을 사용하였다. …천수(天授) 2년(A.D. 691)

정월 22일에 내건(內殿)에서 수포(繡袍)를 내어서 새  
로이 제수된 도독·자사에게 하사하였다. 연재(延載)  
원년(元年; A.D. 694) 5월 22일에 수포(繡袍)를 내어  
문무관 3품 이상에게 하사하였다. 그 포의 무늬에는  
자기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무늬로 된 명(銘)은 자기  
여덟글자의 회문(回文)<sup>16)</sup>이다. …정원(貞元) 7년(A.D.  
795) 11월 9일 상참관(常參官)에 영을 내려 능포(綾  
袍)를 다시 입고 금옥대(金玉帶)를 사용하도록 했다.  
8년 11월 3일에 이르러 문무상참관에게 대능포(大綾袍)  
를 하사하였다. 태화(太和) 6년(A.D. 832) 6월에 칙  
명을 내려 3품이상은 골함서초(鶴銜瑞草)·안함수대(鴈  
銜綬帶) 및 한쌍의 공작능포오(孔雀綾袍襖)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武後擅政 多賤群臣巾子 繡袍 刺以回文之銘 皆無法度  
不足紀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무후<sup>17)</sup>(재위 684~704)가 정치를 마음대로 할 때 군  
신에게 건자(巾子) 수포(繡袍)를 많이 사여하고 회문  
(回文)으로 된 글을 새겼는데 모두는 법도(法度)가 없  
는 것이므로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則天天授二年二月 朝集使刺史賜繡袍 各於背上繡成八  
字銘 長壽三年四月 敕賜岳牧金字銀字銘袍 <舊唐書, 卷  
45, 志第25, 輿服>

측천이 천수(天授) 2년(A.D. 691) 2월 조집사자사에  
게 수포를 사여했는데 등에 각각 수를 놓되 팔자(八字)  
로서 새겼다. 장수(長壽) 3년(A.D. 694) 4월 칙명을  
내려 악목(岳牧)에게<sup>18)</sup> 금자(金字) 은자(銀字)를 새긴  
포를 사여했다.

○大業元年 煬帝始制詔吏尚書牛弘…憲章古則 創造衣  
冠 自天子逮于胥吏 章服皆有等差 始令五品以上 通服朱  
紫 是後師於務殷 車駕多行幸 百官行從 雖服袴褶 而軍  
間不便 六年 復詔 從駕涉遠者 文武官等皆戎衣 貴賤異  
等 雜用五色 五品已上 通著紫袍 六品已下 兼用緋綠 胥  
吏以青 庶人以白 屠商以皂 士卒以黃 <舊唐書 卷45, 志  
第25, 輿服>

양제(煬帝)가 제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부상서  
吏部尚書) 우홍(牛弘)…등에게 소를 내려 옛날의 법칙  
을 본받아서 의관(衣冠)을 창조하게 하였다. 천자로부

15) 隋·唐 때에 제정한 品官제도로 九品외에 九級을  
두었다. 九品을 流內官이라 부르는데 대해 九級을  
流外官이라고 부른다.

16) 漢詩體의 한가지로 순·역·중·횡 어느쪽으로 읽  
어도 의미가 통하는 詩.

17) 무후(武後): 唐中宗의 妃로, 則天武后를 말한다.

18) 악목(岳牧); 四岳과 十二牧, 後代의 公卿·諸侯에  
허당함.

더 서리(行吏)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에 모두 등차가 있었다. 5품 이상에게는 주자(朱紫)색을 두루 입도록 하였다. 이후 군사 사무가 많아지고 황제의 행차가 빈번하여져서 백관이 종행(從行)하기에 고습(袴褶)만을 입는 것이 불편하였다. 6년(A.D. 610)에 다시 소(詔)를 내려 종가(從駕)에 멀리까지 걸어가는 자는 문무관(文武冠) 등 모두가 용의(戎衣)를 입는데 오색(五色)을 섞어 사용하면서, 귀(貴)함과 천(賤)함에 등차를 주었다.

二儀實錄曰 隋煬帝詔牛洪等 造章服差等 三四品紫 五品朱 六品以下綠 官吏青 庶人白 商皂 服色之分 疑自此始 唐馬周傳曰 三品紫 四五品朱 六七品綠 八九品青 大明諸司職掌云 文武官公服 一品至四品緋袍 五品至七品青袍 八品九品綠袍 未入流雜職官 袍與八九品同 <古今事物考 卷6.>

이의실록(二儀實錄)에, 수양제(隋煬帝)가 우홍(牛弘) 등에게 소를 내려 장복(章服)의 등차(等差)를 만들게 하였다. 3·4품은 자(紫)색, 5품은 주(朱)색, 6품이하는 녹(綠)색, 관리는 청(靑)색, 서인은 백(白)색 상인은 조(皂)색이었다. 복색(服色)의 구분은 아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당서(唐書)의 마주전(馬周傳)에, 3품은 자(紫)색, 4·5품은 주(朱)색, 6·7품은 녹(綠)색, 8·9품은 청(靑)색이라고 하였다. 육명제사직장(六名諸司職掌)에서는 문무관의 공복(公服)은 1품에서 4품까지는 비포(緋袍), 5품에서 7품까지는 청포(靑袍), 8·9품은 녹포(綠袍)이며 입류(入流)하지 못한 잡직관(雜職官)의 포(袍)는 8·9품과 같게 하였다.

開元以後…中書令張嘉貞奏 致仕者 佩魚終身 自是百官賞緋紫 必兼魚袋 謂之章服 當時服朱紫佩魚者 衆矣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개원(開元; A.D. 713~741) 이후에 중서령(中書令) 장가정(張嘉貞)이 주청(奏請)하여 치사자(致仕者)는<sup>19)</sup> 종신(終身)토록 어대(魚袋)를 차게 하였다. 이로부터 백관이 비자복(緋紫服)을 상반을 때는 반드시 어대(魚袋)를 겸하도록 하였으니 그것을 장복(章服)이라고 불렀다. 당시에 주자색(朱紫色)의 옷을 입고 어대를 찬 자가 많았다.

內外官章服 舊制凡授都督刺史 皆未及五品者 並聽著緋魚 離任則停之 若在軍賞緋紫魚袋者 在軍則服之 不在軍不在服 若經絃錄 不合得者 在軍亦停之 開元二年 四月勅 宰臣自朝廷出鎮 請朝官至侍御史已上者 即許兼受章服 便爲久例 <唐會要 卷31, 內外官章服>

내외관장복. 옛날의 제도에 도둑·자사로 제수되어도 5품에 이르지 못한 자는 비색(緋色) 옷을 입고 어

대를 찻으며, 말았던 소임을 그만 두면 정지되었다. 만약 군(軍)에서 비자어대(緋紫魚袋)를 상으로 받은 자가 군에 있게 되면 그것을 입고 군에 있지 않으면 복장의 제한에 두지 않았다. 만약 서록(絃錄)<sup>20)</sup>을 조사해 보아도 합치되지 않는 자는 군에서도 그것을 정지하였다. 개원(開元) 2년(A.D. 714) 4월 칙명을 내려 재신(宰臣)이 조정에서 출진(出鎮)하게 되면 조관(朝官)에게 청하여 시어사(侍御史) 이상인 자는 장복을 겸하여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곧 오래도록 정례(定例)가 되었다.

○中朝國忌日 官司不廢生 但不座堂 官員着無紋黑團領 去胸背 謂之素服 <芝峯類說 卷19, 服用部 朝章>

중국의 국기일(國忌日)에는 관청에서 일보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다만 당(堂)에 앉지 않을 뿐이다. 관원(官員)은 무늬없는 검은 단형(團領)을 입고 흉배(胸背)를 빼는데 그것을 소복(素服)이라고 불렀다.

中朝人所謂素服 乃是無文黑絹去褙子者 <朝鮮王朝實錄, 仁祖 5年 7月>

중국인들이 말하는 소복(素服)이란 바로 무늬없는 검정비단에 배자(褙子)를 제거한 것이다.

玄宗謁五陵 初用素服 朔望朝 專用常服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현종(玄宗; A.D. 713~741)이 5릉에 배알할 때, 처음에는 소복(素服)을 입고 초하루·보름의 조회(朝會)에서는 오로지 상복(常服)만을 사용했다.

○筆譚曰 中國衣冠 自北齊以來 全用胡服 窄袖<sup>21)</sup>緋綠 唐武德貞<sup>22)</sup>觀間猶爾 開元後 稍博矣 通典曰 宇文護始袍加下襪 遂爲後制 卽今公服也 大明諸司職掌云 文武官公服 用盤領右袵袍 或紵絲紗羅網從宜制造 袖寬三尺 在京官朝見奉事謝辭 及在外官清晨公座 則用公服幘頭 <古今事物考, 卷6.>

필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관은 복제이후로 전부 호복을 사용했다. 소매가 좁고 비(緋)·녹색(綠色)이었는데 당 무덕(武德; A.D. 618~626)과 정관(貞觀; A.D. 627~649) 때도 여전하였다. 개원(開元; A.D. 713~741)이후에 소매가 조금 넓어졌다. 통전(通典)에 가로대 우문호<sup>23)</sup>가 포에 하란(下欄)을 첨가하여 드디어 후일의 제도가 되었으며 즉 오늘날의 공복이 그것이다.

19) 치사자(致仕者); 老齡으로 벼슬을 辭職한 다.

20) 서록(絃錄); 受賞의 기록

21) 細로 있으나 事物記原과 비교한 결과 「袖」가 맞을 것 같음.

22) 眞로 있으며 事物記原에는 「正」으로 있는데 東洋年表에 의하면 貞觀(正觀)으로 기재되어 있음.

23) (?~572) 北周 孝閔帝의 從兄으로 北周의 大臣임.

대명제사직장(大明諸司職掌)이 말하기를 문무관 공복은 반령 우임포를 사용하고 흑 저사사라견(紵絲紗羅絹)을 사용하여 마땅한 바를 따라 만든다. 소매 넓이는 3尺이고 경(京)에 있는 관리(官吏)가 조견(朝見), 봉사(奉事), 사사(謝辭)할 때와 외곽에 있는 관리가 아침에 공좌(公座)에 나아갈 때 공복 복두를 사용한다.

唐初年服袖甚窄全胡服 中年漸寬 末年又寬 <朱子語類 卷第91, 禮8, 雜儀>

당초년에는 소매가 매우 좁아서 전부 호복이었다. 중기에는 점차 넓어졌고 말년에는 더욱 넓어졌다.

○ 晉公宇文護始命袍加下襪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진(晉)의 공신(公臣) 우문호가 명을 내려 포(袍)에 하란(下襪)을 가하기 시작했다.

金臣下公服 大定十五年曰 袍不加襪 非古也 遂命文資官公服皆加襪 <金史, 卷43, 志第24, 輿服中>

금(金) 신하의 공복; 대정(大定: A.D. 1175)에 가로매 포에 난(襪)을 가하지 않아 옛 제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문자관에게 명을 내려 모두 난을 가하게 하였다.